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91
----------	-----

2021. 4. 30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4월 13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4월 22일

-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오세동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21.01.01.)에 따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및 농업기술원 특화작목 시험장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구 신설 :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(안 제6장)
-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직제조정 (안 제25조제2항)
 - 곤충종자보급센터(과) → 곤충종자산업연구소(특화작목시험장)
-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명칭변경 (안 제25조제2항)
 - 포도연구소 → 포도다래연구소
 - 마늘연구소 → 마늘양파연구소
 - 수박연구소 → 수박딸기연구소
 - 대추연구소 → 대추호두연구소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,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변경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주요내용은

첫째, 신설되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를 직급 및 부서설치에 맞춰 합의제행정기관장,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추가하고,

둘째, 안 제6장에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기구를 신설하였으며,

셋째,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현행업무중 직제조정 및 명칭을 변경하였음.

- 직제조정

- 곤충종자보급센터(과) → 곤충종자산업연구소(특화작목시험장)

- 명칭변경

- 포도연구소 → 포도다래연구소, 마늘연구소 → 마늘양파연구소

- 수박연구소 → 수박딸기연구소, 대추연구소 → 대추호두연구소

이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과 농업기술원의 신(新)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직제조정 및 명칭변경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691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4월 13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9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4월 13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21.01.01.)에 따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및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구 신설 :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(안 제6장)
-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직제조정 (안 제25조제2항)
 - 곤충종자보급센터(과) → 곤충종자산업연구소(특화작목시험장)
-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명칭변경 (안 제25조제2항)
 - 포도연구소 → 포도다래연구소
 - 마늘연구소 → 마늘양파연구소
 - 수박연구소 → 수박딸기연구소
 - 대추연구소 → 대추호두연구소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15조”를 “제116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사업소장·출장소장”을 “사업소장·출장소장·합의제행정기관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”를 “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·합의제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수박연구소, 대추연구소”를 “곤충종자산업연구소, 포도다래연구소, 마늘양파연구소, 수박딸기연구소, 대추호두연구소”로 한다.

제6장의 제목 “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”를 “합의제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제63조를 제65조로 하고, 제63조 및 제6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3조(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법 제116조 및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치경찰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라 자치경찰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(이하 “자치경찰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.

제64조(사무국)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.

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,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65조(종전의 제63조)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 공무원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”를 “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·합의제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②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출장소”를 “출장소, 합의제행정기관”으로 한다

③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출장소”를 “출장소, 합의제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④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6호 중 “사업소 또는 출장소”를 “사업소, 출장소 또는 합의제 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⑤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가목 중 “출장소”를 “출장소, 합의제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⑥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일반행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반행정 분과	기획관리실 (정책기획관)	의회사무처, 공보관, 감사관, 자치경찰위원회, 기획관리실, 행정국, 충북도립대학교, 자치연수원, 서울세종본부, 북부출장소, 남부출장소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

⑦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실·국·본부·원장·사업소장 및 출장소장”을 “실·국·본부·원장·사업소장·출장소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장”으로 한다.

⑧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사업소”를 “사업소,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[별표 1]

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(제25조제3항 관련)

명 칭	위 치
곤충종자산업연구소	청주시 관내
포도다래연구소	옥천군 관내
마늘양파연구소	단양군 관내
수박딸기연구소	음성군 관내
대추호두연구소	보은군 관내
와인연구소	영동군 관내
유기농업연구소	괴산군 관내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<u>제115조</u>까지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, 소속기관의 설치,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116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 (실장·국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)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본청의 실장·국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<u>사업소장·출장소장</u>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조 (실장·국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업소장·출장소장·합의제행정기관장</u>-----.</p>
<p>제3조(과·담당관의 설치) ① (생략) ② <u>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</u>의 국(부)·과와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3조(과·담당관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·합의제행정기관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5조(특화작목시험장) ① (생략)</p>	<p>제25조(특화작목시험장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략)

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수박연구소, 대추연구소, 와인연구소, 유기농업연구소를 둔다.

③ (생략)

제6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

<신설>

<신설>

행과 같음)

② -----
- 곤충종자산업연구소, 포도다래연구소, 마늘양파연구소, 수박딸기연구소, 대추호두연구소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장 합의제행정기관

제63조(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법 제116조 및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치경찰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라 자치경찰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(이하 “자치경찰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.

제64조(사무국)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

<신 설>
제63조 (생 략)

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
사무국장을 둔다

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
하며,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
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
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7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

제65조 (현행 제63조와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116조 (합의제행정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】

제18조 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.

②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.

제24조 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
2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, 예산, 장비,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
3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,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
4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, 제도, 정책, 관

행 등의 개선

5.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
 6.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·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,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
 7.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
 8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
 9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
 10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
 11.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·사고 및 현안의 점검
 12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
 13.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·조정
 14.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·명령에 관한 사무
 15. 국가경찰사무·자치경찰사무의 협력·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
 16.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·조정 요청
 17. 그 밖에 시·도지사, 시·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
- ②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·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7조 (사무기구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.

② ~ ③ 생략

④ 사무기구의 조직·정원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조례로 정한다.